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추가〉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4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추가	3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4일 이병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차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4조).

Ⅲ. 검토의견

1.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추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현행법에 규정된 고용노동부장관 뿐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생략)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u>고용노동부장관</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 <u>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는 것을 막고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며,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장관 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를 도모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확보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의무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보고하여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실제 해당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이행되기 어렵다는 점과 고용노동부 외에 중대재해 발생 시 조사 및 수사나 작업중지 등의 실질적인 처분을 부과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이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

건법」상 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에도 보고토록 하는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추가적인 절차로 인해 실질적인 중대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 가능하고, 사업주 입장에는 어떤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45